

##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방문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 첨부

| 구분          |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 정서 지원        |                                                                               |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의사소통 도움 등    |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
| 구강청결 도움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인지자극 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 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 옷 갈아 입히기 도움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겹 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 머리 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 몸 씻기 도움     |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인지관리 지원      |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              |                                                                               |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개인활동 지원      |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              |                                                                               |

- 방문목욕급여 서비스의 내용 첨부

| 구분                      | 세부내용                                                       |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전문목욕(차량내목욕) |                                                            |
| 목욕 준비                   | 목욕 전 피부색, 욕창등 상태 확인 및 목욕 도구, 욕조 준비                         |
| 목욕을 위한 이동 도움            | 낙상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목욕 장소로 이동                                    |
| 목욕 수행                   | 전신 목욕 수행 및 머리감기                                            |
| 목욕 후 뒷정리                | 물기 제거 및 깨끗한 옷 갈아입기, 보습을 위한 로션 바르기 및 목욕 물품 정리정돈, 목욕 후 상태 관찰 |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 구분    |       | 금액(원)                     | 내역                                                                  |
|-------|-------|---------------------------|---------------------------------------------------------------------|
| 월이용한도 | 보험료   | 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 자부담   | 본인부담금 | 15%<br>6%(60%)<br>9%(40%)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br>(의료,감경 급여수급자의 경우 6%, 9%,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 |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1) 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 4) 신원 인수인(보호자,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 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 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 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마. 이용절차

-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②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초기상담기록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표준약관)등(를)을 체결한다.
-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구.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가급여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22년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 '23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 인상률      | 9.81%     | 10.63%    | 2.72%     | 2.73%     | 2.72%     |

급여유형

2024년 급여비용 장기요양수가

① 방문요양

(단위 : 원)

|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
| 30분    | 16,190  | 2,429     | 16,630  | 2,495     |
| 60분    | 23,480  | 3,522     | 24,120  | 3,618     |
| 90분    | 31,650  | 4,748     | 32,510  | 4,877     |
| 120분   | 40,280  | 6,042     | 41,380  | 6,207     |
| 150분   | 46,970  | 7,046     | 48,250  | 7,238     |
| 180분   | 52,880  | 7932      | 54,320  | 8,148     |
| 210분   | 58,930  | 8,840     | 60,530  | 9,080     |
| 240분   | 65,000  | 9,750     | 66,770  | 10,016    |

② 방문목욕

(단위 : 원)

| 구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
| 차량이용(차량 내) | 82,160  | 12,324    | 84,670  | 12,701    |
| 차량이용(가정 내) | 74,070  | 11,111    | 76,340  | 11,451    |
| 차량 미 이용    | 46,250  | 6,938     | 47,670  | 7,151     |